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계엄선포 시 본회의 자동개의 등〉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315호)

2025. 2.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 상 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학영 · 김재원 · 정준호 · 정태호 · 박정현 · 임호선
김영배 · 문금주 · 이정문 · 전재수 · 백혜련 · 문정복
의원(12인)

2. 제 안 일 : 2025. 1. 7.

3. 회 부 일 : 2025. 1. 8.

※ 의안번호 : 73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 제77조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비상계엄 등 국가 비상상황에서 의장이 질병, 사고 또는 계엄군의 억류 등으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고 직무대리자를 지명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국회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 본회의가 자동으로 개의되도록 하여 국회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기 전까지 의장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

의장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아닌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에게 우선적으로 직무대리권을 부여하여 국회가 헌법상의 책무를 안정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3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에 본회의가 개의된 것으로 보고 의원들이 지체없이 출석하도록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할 때까지 의장이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아닌 교섭단체의 소속 부의장부터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3 신설).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73조의3(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본회의) ① 제72조¹⁾, 제73조²⁾ 및 제76조³⁾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에는 본회의가 개의된 것으로 보며 의원들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본회의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할 때까지 의장이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이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아닌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부터 직무를 대리한다.

1) 제72조(개 의) 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그 개 의시(開議時)를 변경할 수 있다.

2) 제73조(의사정족수) ①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대한민국헌법」 제77조⁴⁾는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제1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함(제5항).

개정안은 비상계엄 선포 시 현행법에 따른 본회의 개의요건, 의사일정작성 및 통지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회의가 자동 개의된 것으로 간주하고, 의원들의 신속한 출석을 의무화하는 한편, 의장이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소속되었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아닌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에게 우선적으로 직무대리권을 부여함으로써 헌법

② 의장은 제72조에 따른 개의시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유회(流會)를 선포할 수 있다.

③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다만,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 외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

3) 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附議) 요청된 안건의 목록을 그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매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적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의 개의 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적은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④ 의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⑤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4)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7조제5항에 따른 국회 계엄해제요구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은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의 실질적인 보장이라는 기대효과, 정치적 균형성 및 입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14